

보건진료센터 규정

- 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보건진료센터(이하 “진료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3. 7. 22)
- 제 2 조 (기능)** 진료센터는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등 보건관리에 기여한다. (개정 2013. 7. 22)
- 제 3 조 (센터장)** ① 보건진료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 (개정 2013. 7. 22)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하거나 또는 본 대학교 지정병원 의사를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13. 7. 22)
- 제 4 조 (직원)** ① 진료센터에 의료기사와 간호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3. 7. 22)
② 의료기사와 간호사는 각각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- 제 5 조 (업무)** 진료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3. 7. 22)
1.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1차 진료
 2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
 3. 각종 의료기기, 의약품의 구입 및 관리
 4.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 6 조 (운영위원회)** ① 진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3. 7. 22)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진료센터장으로 한다. (개정 2013. 7. 22)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- 제 7 조 (위원회의 임무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
 2. 시설에 관한 사항
 3. 기타 보건진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3. 7. 22)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